#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223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한정애·문진석·조인철

송옥주 · 이기헌 · 박홍근

서영교 · 신정훈 · 이학영

임오경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주택가에 전선, 통신주, 전주(電柱), 인터넷 통신선, 방송 케이블 등이 수십년간 난립함에 따라 도시 미관이나 자연경관을 저해하며 도심 슬럼화나 우범화를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 신사업자의 경우 전주에 설치되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자만으로는 사업이 부진하 여 대다수 전주를 관할하는 전기사업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경관을 저해하는 전선로 등의 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11호의2 및 제72조의3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72조의3에 따른 가공전선로 정비 사업

제72조의2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3에서 같다"로 한다.

제7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2조의3(가공전선로의 정비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생활안전 및 도시 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를 정비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공전선로 정비계획 (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전선로의 지중이설 현황에 관한 사항
  - 3. 정비사업 및 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4.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 및 관련 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사업에 시행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정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제49조(기금의 사용)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1의2. 제72조의3에 따른 가공
	전선로 정비 사업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
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	설) ①
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	
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	
(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	<u>포함한다. 이</u>
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	하 이 조 및 제72조의3에서 같
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u>다</u>
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72조의3(가공전선로의 정비의
	무) ① 전기사업자는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

- <u>치된 전선로를 정비하여야 한</u> <u>다.</u>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정비사업이 체계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공전 선로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 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u>1.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u> <u>표</u>
- 2. 전선로의 지중이설 현황에

   관한 사항
- 3. 정비사업 및 전선로의 지중

   이설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4.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 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

선 "전기통신사업자"라고 한다) 및 관련 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사업에 시행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한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절차, 그 밖에 정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